

99.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00. 6. 27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예결특위 상정 및 심사 의결
 ○ 상정 : 2000. 7. 3
 ○ 심사 및 의결 : 2000. 7. 3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99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
 ○ 99년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을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요청

나. 주요골자

-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부천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것임

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세 입)	예산현액	결 산 액		
			세 입 (수납액)	세 출 (지출액)	잉 여 금
계	591,204,290	675,673,769	660,642,472	494,684,084	165,958,388
일 반 회 계	357,519,565	408,875,335	416,557,670	307,181,134	109,376,536
특 별 회 계	233,684,725	266,798,434	244,084,802	187,502,950	56,581,852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84,248,020	216,978,337	196,683,575	163,689,245	32,994,330
기 타 특 별 회 계	49,436,705	49,820,097	47,401,227	23,813,705	23,587,522

3. 질의 및 답변 요지

질문 내용	답변 내용
<p>○ 3대의회 들어 세번째 결산검사를 진행했는데 매년 결산서에 나타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있어서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미수납액과 과년도 수입의 징수결정액이 현격한 차이를 보여왔음 결산때마다 누차 지적하였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는 이유와 내년도 복식부기 시범 실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사유 규명과 복식부기시스템 도입 전에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p>	<p>○ 현재 별도의 정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세무운영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세정부문과 수납기능의 분리로 근본적인이 발생되었음. 또한 전산시스템 운영체계가 부과와 징수를 분리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다 보니 오류가 발생되었으며, 과거 구청에서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다 시로 통합운영되면서 발생된 오류들이 누적되었음 따라서 향후 세외수입과 수납팀의 합병을 강구하고 금년도말까지 정리 가능한 부문에 대하여는 정리하여 내년도부터는 수납과 징수 그리고 미납액에 대한 관리가 일일결산을 통하여 확인검증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음</p>

4. 토론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세입결산 중 과년도 이월 미수납액 불일치분에 대하여는 필요하다면 인력과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연내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지방세에 있어서는 연도별, 세목별, 그리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각종별로 수기장부와 세무전산망의 통합적인 시스템 속에서 일차적 자료를 정확히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이월 미수납액 및 과년도 수입의 징수결정액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추경 때마다 진행되는 과정을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8. 체계적 심사내용

○ 생 략

99.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안번호	제343호
의결년월일	2000. 7. 6 (제79회)

제출년월일 : 2000. 6. 27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임

 주요골자

-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分	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총 계	723,539,079,574	660,642,471,597	62,896,607,977	6,415,406,140	56,481,201,837
일 반 회 계	465,783,105,543	416,557,670,224	49,225,435,299	6,415,406,140	42,810,029,159
공기업특별회계	200,309,360,227	196,683,574,437	3,625,785,790	-	3,625,785,790
기타특별회계	57,446,613,804	47,401,226,916	10,045,386,888	-	10,045,386,888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分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총 계	675,673,769,070	495,95,062,326	103,134,564,502	76,585,142,242
일 반 회 계	408,875,335,480	307,181,133,780	84,491,914,080	17,202,287,620
공기업특별회계	216,978,336,670	163,689,244,822	16,479,937,012	36,809,154,836
기타특별회계	49,820,096,920	25,083,683,724	2,162,713,410	22,573,699,786

 승인근거

-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세입세출결산의 제출)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대표위원 홍 인 석
 위원 이 원 재
 위원 정 길 영
 위원 박 해 율
 위원 이 기 전

총 평

- 부천시의 재정여건은 1997년까지는 중동신시가지 개발 등 세수 증대 요인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IMF 경제난 이후 세수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설정입니다. 이러한 지방재정 긴축기를 맞아 경영행정을 도입하여 공공부문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세수 확보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재정자립도를 구성하는 내부재원뿐 아니라 도세징수교부율의 하향 조정 등 지방재정의 변화 추이에 따라 외부재원에 대한 확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내년부터 부천시에서 시범실시될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에 따른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복식부기제도의 도입과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기초자료인 부천시의 자산과 부채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정확한 세무자료에 기초한 세무전산시스템도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회계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행정구조조정에 따른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각 부서 회계 담당공무원의 회계업무에 관한 실무지식이 미숙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상대적으로 소홀히 관리되어온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회계업무가 부수적인 업무로 취급되면서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앞으로 일반회계만이 아니라 특별회계와 기금 관련 담당공무원만큼은 일정기간 회계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로 충원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1. 199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결산총괄은

- 세입예산액 591,204,290,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60,642,471,597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675,673,769,070원(전년도 이월금 84,469,479,07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494,684,083,842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165,958,387,755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 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165,958,387,755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 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6,610,165,330원
 - 사고이월 10,918,218,552원
 - 계속비이월 75,606,180,620원
 - 보조금 집행잔액 570,894,2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252,929,033원이다.

2. 1999년도 일반회계는

- 세입예산액 357,519,56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6,557,670,244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408,875,335,480원(전년도이월금 51,355,770,48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307,181,133,78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109,376,536,464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 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109,376,536,464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 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7,664,528,680원
 - 사고이월 2,050,074,330원
 - 계속비이월 74,777,311,070원
 - 보조금 집행잔액 534,808,0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349,814,304원이다.

3. 1999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가. 총괄결산사항은

- 세입예산액 233,684,72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4,084,801,353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266,798,433,590원(전년도 이월금 33,113,708,59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187,502,950,062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56,581,851,291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액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56,581,851,291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8,945,636,650원

- 사고이월 8,868,144,222원
- 계속비이월 828,869,550원
- 보조금 집행잔액 36,086,1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903,114,729원이다.

나.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 세입예산액 49,436,70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401,226,916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49,820,096,920원(전년도 이월금 383,391,92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23,813,705,24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23,587,521,676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23,587,521,676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944,353,550원
 - 사고이월 218,359,86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36,086,1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388,722,126원이다.

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는

1) 주택사업특별회계

- 세입예산액 48,48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305,939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48,482,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15,344,41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32,961,529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사업에 대한 기존채무상환액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32,961,529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961,529원이다.

2)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10,912,89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903,205,420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10,912,892,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10,878,625,95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24,579,47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보험기금사업에 대한기

기존 채무상환액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24,579,47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24,579,4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0원이다.

3)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199,88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1,359,085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199,888,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70,000,00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171,359,085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 대한 기존 채무상환액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171,359,085원은 다음연도에 이월 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1,359,085원이다.

4)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14,446,95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209,395,019이며
- 세출예산현액 14,575,881,000원(전년도 이월금 128,923,00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595,400,97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12,613,994,049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12,613,994,049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897,323,00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716,671,049원이다.

5)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612,000,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63,919,236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612,000,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373,000,00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490,919,236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기존채무 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490,919,236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0,919,236원이다.

6) 교통사업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12,272,88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090,479,922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12,527,356,920원(전년도 이월금 254,468,92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7,811,297,51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3,279,182,412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사업에 대한 기존채무 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3,279,182,412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047,030,550원
 - 사고이월 218,359,86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11,506,6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02,285,332원이다.

7)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10,943,59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044,562,295원이며
 - 세출예산액 10,943,597,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4,070,036,40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6,974,525,895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6,974,525,895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 ※ 99. 잉여금 1,475,525,895원 + 한미은행 예치금 5,500,000,000원 = 6,974,525,895원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74,525,895원이다.

세입분야 결산검사 검토사항

□ 개 요

○ 1999년도 세입구조는 일반회계가 63%, 특별회계가 37%의 비중으로 일반회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회계는 여전히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의 비중이 높지만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세외수입의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에 지방세를 포함하여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국고, 도비) 등 외부재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공영개발특별회계의 비중이 높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올해까지 운영되고 내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입되면 일반회계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일반회계의 효율적 재정운용이 더욱 중요하게 될 전망입니다.

구 分		실제 수납액 (단위 : 백만원)	구 성 비 (%)		
일	반		1999년	1998년	1997년
회 계	지 방 세	126,890	19.20	18.53	17.67
	세 외 수 입	173,061	26.19	29.57	32.91
	외 부 재 원	116,606	17.65	11.75	5.70
	소 계	416,557	63.05	59.85	56.28
특 별 회 계	공 기 업	94,550	14.31	16.87	19.31
	상 수 도	72,987	11.04	12.15	12.54
	하 수 도	29,146	4.41	5.11	6.65
	기 타 특 별 회 계	47,395	7.17	5.99	5.21
	소 계	244,079	36.94	40.14	43.72
	합 계	660,637	100	100	100

연도별 세입 추이(실제 수납액 기준 = 수입액)

(수입액 단위 : 의원,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

연도	구 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 계
1999	수 입 액	4,165	2,440	6,606
	전년대비 증감률	△2.2	△14.5	△7.1
1998	수 입 액	4,258	2,855	7,113
	전년대비 증감률	0.7	△13.1	△5.3
1997	수 입 액	4,229	3,285	7,514
	전년대비 증감률	8.3	14.5	10.9
1996	수 입 액	3,905	2,870	6,775
	전년대비 증감률	8.1	4.6	6.6
1995	수 입 액	3,613	2,743	6,356
	전년대비 증감률	12.2	△13.1	0.4

- 중동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세수증대 요인의 소멸과 IMF 경제국면에 따른 세수감소 요인의 발생으로 인하여 1998년에 이어 세수감소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변화에 따라 세수 증대를 통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외부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에도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징수실적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미수납액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결손처분의 경우 전년 대비 550%를 상회하는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시 신중하게 판단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9년	1998년	증 감 액	증감률(%)
정수 결정액	465,783	468,208	△2,425	△0.5
실제 수납액	416,557	425,835	△9,278	△2.2
미 수 납 액	49,225	42,372	6,853	16.2
결손 처분액	6,415	983	5,432	552.6
다음연도 이월액	42,810	41,389	1,421	3.4

1. 정확한 세입자료에 기초한 세무전산망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있어서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미수납액과 과년도 수입의 징수 결정액이 차이가 있음. 지방세 세입에 있어서는 98년도 결산시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은 36,433,824,490원인데 비해 99년도 결산시 과년도수입의 징수결정액은 35,364,297,750원으로 1,069,526,740원의 차이가 있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98년도 결산시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은 3,955,230,259원인데 비해 99년도 결산시 과년도수입의 징수결정액은 3,928,369,349원으로 26,860,91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음
-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해서는 그간 누적되어온 세입자료의 부정확성을 하루속히 개선해야 함. 이는 부과와 징수-수납 과정에서 부과칠회나 가산금 결의, 과오납 반환시 이자 등의 가감요인이 존재함에도 세입자료가 그때마다 정리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세무전산 시스템이 통합적으로 구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수기장부와 세무전산망간의 자료가 불일치하기 때문으로 사료됨
- 이러한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세입결산자료의 부정확함으로 인하여 정확한 세수추계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사실상 미수납액의 관리 착오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내년부터 시범실시될 복식부기의 도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 개선방안

- 복식부기 시범실시 이전인 연내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연도별, 각 세목별로 부과 및 징수-수납 장부와 세무전산망과의 대사작업을 실시하여 정확한 세입자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2. 정확한 사업비 예측에 따른 지방채 발행

□ 현황 및 문제점

- 부천시는 98년도에 발생한 내동 가스폭발사고 관련 피해자 대위변제(보상)와 관련하여 98년 12월 1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120억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득하고, 98년 12월 21일 시의회로부터 지방채 예산승인을 얻어 98년 12월 22일과 99년 1월, 4월에 걸쳐 시금고인 농협으로부터 9.25% 이자율에 5년 거치 3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였음
- 내동 가스폭발사고 관련 피해자에 대한 대위변제(보상)는 손해사정액에 따라 대인, 대물, 소액보상금 등 총 150건 10,609,591,890원이 집행되었으며, 지방채 발행액 110억 중 4억원에 달하는 잔액은 지방채 상환에 활용되지 않고 유휴자금으로 통합 관리되어 지방채 발행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관리되고 있음

□ 개선방안

- 앞으로 지방채 발행시 정확한 소요되는 자금 예측에 근거하여 지방채를 발행토록 하고, 지방채 발행

사업 종료 후 잔액은 가급적 조속히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상환 이자의 손실을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각 구청 도로점용료 관리 철저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각 구청의 도로점용료 부과에 있어서 허가기간 경과 후 안내장에 발송하여 재신청을 받아 재부과를 하고 있는 설정이나 실제로는 허가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계속 점용하고 있으나 과세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음
- 특히 도로사용료의 성질상 계속 점유가 불가피한 주유소, 병원 등 반영구적 대상물건에 대한 도로점용료의 누락 여지가 많이 있음

□ 개선방안

- 도로점용허가시 관리대장에 지번에 따른 고유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그 관리번호순으로 관리함으로써 명의 이전 등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에도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등 사후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함

< 도로점용료 관리대장 예시안 >

도로점용료 조정내역 관리부(동별, 지번순)

※ 정기분, 신규, 일시점용으로 별지 작성

고유관리 번호	지번	면적	점용 목적 (상호, 명칭)	납세의무자			점용료		
				성명	주소	허가기간	2000년	2001년	연결연번
원미구-1									
원미구-2									

4. 각 구청 환경위생과의 체납과태료 정리

□ 현황 및 문제점

- 3개 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 1998년도에 청소사업소로부터 무단투기, 오수정화, 대기, 소음 등의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이관받을 당시 이미 상당한 체납액과 체납자의 명부를 제출받았음
- 당시 이관된 체납자 명부는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가 부족하고 단순히 주소만 기재됨으로 인해

주소불명 등으로 징수율 낮은 형편임

따라서 해당구청에서는 2000년 또는 2001년부터 상당한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이 불가피한 상태에 있음.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관계로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실제로 압류 등으로 체납액 징수처분을 한 사례도 적음

□ 개선방안

-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대장관리 정도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체납이 발생할 경우에 대장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급적 체납자에 대한 조속한 징수가 요청되며, 현재 자동차 관련 과태료만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하고 있으나 기타 과태료에 대하여도 차적조회 등을 통하여 자동차에 대한 압류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청소사업소로부터 이관받은 체납자는 일체정리기한을 정하여 주소 불명자와 확인자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5. 보건소의 세외수입 관리 철저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보건소의 진료비는 현금으로 수납되어 수납과와 진료실에서 일계표를 작성하고 행정실에서 검토하여 징수부에 당일 징수결정을 하고 있음
현금수납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가 요망됨
- 그리고 진료비 중 의료보험청구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공단, 의료보호기관 등에 청구한 금액이 입금된 때에 징수결정 및 수납처리를 하고 있음. 그리고 청구금액이 보건소에 입금된 후에도 관련기관의 입금관련 통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한 후 시급고에 입금하고 있는 실정임
- 소사구보건소의 의료보험 청구 및 수납과 관련한 통장과 장부의 기재내역은 다음과 같음

일자	통장 입금액	징수부 수납액	입금처
12. 16	7,374,880	-	의료보험공단
12. 18	500,860	-	"
12. 23	22,390	-	경기4지구조합
12. 23	22,390	-	한진의보
12. 27	-	7,920,500	의료보험공단
12. 14	2,705,200	-	원미보건소
3. 15	4,769,880	-	의료보험공단

- 원인을 규명하기 이전에 통장에 자금이 입금되면 그 날짜로 장부에 수납처리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도 불일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
- 통장에 자금입금이 있었음에도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이유로는 98년도 결산검사시의 지적사항인 의료보험료 청구시에 징수결의를 하고 수납시에 수납처리를 할 것(종전까지는 수납일에 징수결의와 수납처리를 동시에 기록)
- 보험료 청구시에 징수결의를 하면서 수납시 징수결의 시점의 장부로 수납처리를 하는 이른바 날짜 중심의 장부정리가 아닌 보험료 청구 중심의 장부를 정리하려고 하였고, 그 또한 정확히 운영되지 아니하여 장부로서의 기능이 상당부분 상실된 상태임
- 의료보험청구분 금액에 대하여 입금된 날에 징수결정 및 수납처리가 되기 때문에 청구금액 중 관련기관으로부터 조정된 금액(주로 삭감액) 등 미수납된 금액에 대한 관리가 미흡함. 원미구의 경우 실제로는 진료비 중 의료보험청구분 중 미수납액이 있음에도 장부상에는 미수납액이 기재되고 있지 않음

□ 개선방안

- 진료비의 현금수납에 대해서는 전산망의 구축으로 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보험료 청구시 징수결의를 하고 통장수금시 수금일에 수납처리를 하는 날짜 중심의 장부기재를 하여 특정일의 통장과 장부잔액이 항상 일치되게 관리할 것
- 보험청구분에 대한 징수결정은 보험청구시에 하고 관련기관으로부터 입금된 익일에는 시금고로 납입하도록 해야 함. 관련기관으로부터 조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에서 가감하도록 하고 사후 관리할 것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수입(교통특별회계)관리철저

□ 문제점

- 99년 7월 1일 시설관리공단 출범 이후 입금에 대한 실사가 제대로 없었으므로 인하여 주차요금 미납징수액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2000년 5월 최초로 부과됨)

□ 개선사안

- 수입금처리에 대한 지도점검이 필요함
- 징수미납액 수납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차적 조회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세출분야 결산검사 검토사항

□ 개요

- 1999년도 세출구조를 세출결산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본적 지출이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이전 경비와 물건비의 비중이 높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시설비 및 부대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자본적 지출은 줄어든 반면 민간이전 및 사회단체보조금 등의 이전경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부천시를 대신하여 공익적 활동을 전개하는 민간사회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정부회계에 익숙하지 않은 지원단체에게는 보조금 정산에 대한 사전교육과 적절한 사업평가를 통한 차등지급방안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1999년도		1998년도		증감액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인 건 비	527	10.6	520	9.6	7
물 건 비	884	17.8	738	13.6	146
이 전 경 비	1,050	21.2	837	15.5	213
자 본 지 출	2,181	44.0	2,795	51.6	△614
용 자 및 출 자	27	0.5	13	0.2	14
보 전 재 원	265	5.3	274	5.0	△9
내 부 거 래	13	0.2	223	4.1	△210
예비비 및 기타	13	0.2	11	0.2	2
합 계	4,960	100	5,413	100	△453

1. 지방채 상환계획 수정 검토 –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고이자율의 지방채를 우선 상환

□ 현황

- 1999년도까지 부천시의 지방채 발행액은 원금 207,728백만원과 이자 130,696백만원 등 총 338,424백만원이며, 지방채 상환잔액은 총 294,102백만원임<표1>
- 지방채 발행으로 이미 완료된 사업 중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 관련 상환잔액에서 4,016백만원, 소사구청사 신축 관련 상환잔액에서 348백만원 및 내동 가스폭발사고 피해보상 관련 지방채 발행액 11,000백만원 등은 9% 이상의 이자율로 상환하고 있고 9.34%의 고이자율로 상환하여야 할 지

방체도 28,818백만원임

□ 문제점

- 1999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9,131백만원으로 평균 5.3%의 이자소득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나 대부분 추경을 통한 사업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음
- 현재 연도별 지방채상환계획에는 지방채 발행 사업별 이자율에 대한 고려없이 수립되어 있음

□ 개선방안

- 현재 연도별 지방채상환계획을 재조정하여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10억원 이상의 이자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사료됨

2. 임차재산에 대한 채권확보대책 강구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부천시가 사인으로부터 임차하고 있는 재산 보증금은 총 27건에 7,162,000천원임<표2>
- 이 중 부천시가 채권확보 가능한 금액은 6,366,308천원으로 춘의동 209-2, 14에 소재한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료 150,000천원 전액을 포함하여 총 4건에 약 795,692천원은 채권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오정구보건소의 경우 94년 8월 3일 최초의 보건소 임대계약 이후 2년마다 자동 연장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 및 가압류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토지 근저당 설정 : 오정농협 42,000천원
 - 건물 근저당 설정 : 부천시 850,000천원
 - 토지 및 건물 가압류 : 800,000천원

□ 개선방안

- 부천시의 임차재산보증금의 채권미화보액을 사안별로 사유를 파악하여 채권확보방안을 찾을 것. 특히 건물에 대해서만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오정구보건소와 같은 경우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통하여 체권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할 것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용도에 맞는 예산편성과 집행

□ 현황

- 1999년도 각 부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 예산액 301,900,000원 중 285,539,900원을 지출하였음
- 19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성격의 경비로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분야에 편성하고, 예산에서 정한 목적

대로 실제사업에 활용되어야 하며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하게 되어 있음

□ 문제점

- 대부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충무과와 비서실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는 사용내역의 대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집행하고 있음
- 각 실·과·소별 예산액을 기준하여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사업에 활용되어야 하나 농산지원 사업소, 청소사업소, 환경위생과, 시민복지과 등에서 해당 부서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본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음
- 이러한 사례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입법과목상 항간 '이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

□ 개선방안

-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각 부서별로 해당 업무와 유관한 용도로 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추가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편성 등을 통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예비비의 적정한 집행

□ 현황 및 문제점

- 정보관리과에서는 1999년 4월 28일에 업무용소프트웨어 불법복제품을 정품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예비비 228,079,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7월 12일부터 10월 27일 사이에 집행하였음
- 이는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품의 사용금지 및 99. 5월의 공공기관 중점단속에 대비한 업무용 필수 정품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급박한 상황에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이나, 사전 검토가 있었으면 당초예산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99년 4월 15일에 의회 의결)이나 3차 추가경정예산(99년 7월 8일에 의회 의결)에 반영하여 적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이 가능하였을 것임. 그리고 상기의 행위는 위반사항이 관계기관의 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과태료 등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했다고 사료됨

□ 개선방안

- 정보관리과의 예비비사용은 당연히 예측가능한 일로 당초예산 또는 당시 추경예산에 편성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사료됨
- 앞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상기와 같은 상황은 피하여야 할 것임

5. 사고이월사업의 조속한 추진

※ 서부도서관의 조속한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부천시는 1996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여 1998년 3월까지 토지매입이 완료된 서부도서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서부도서관의 건립은 국·도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0년 6월 20일 현재 국비 3억과 도비 3억을 이미 지원받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국비와 도비를 각각 3억씩 지원받을 계획임
- 1999년 12월 31일 현재 서부도서관 건립계획은 시설비가 1,235,618,800원과 시설부대비 3,000,000원이 사고이월되어 있음
- 서부도서관의 건립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사고이월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2000년도 중에 건축을 시행하지 않으면 국·도비의 반납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 현재 문화예술과에서는 총 사업비 9,600,000,000원 중에서 사고이월된 금액만 예산으로 성립되어 있으며 사고이월된 예산으로는 공사 발주가 불가능한 상태로 있어 공사가 중지되어 있음

□ 개선방안

- 서부도서관의 건립사업은 이미 용지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건축공사만을 남긴 상태에서 타용도에 전용할 계획이 없다면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1999년도의 예산이 사고이월되어 있으므로 2000년도에는 반드시 공사가 착공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공사가 착공되지 않으면 신규로 예산을 다시 수립하여야 하며 이미 지원된 국·도비의 반납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공사발주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됨

※ 소사구 경로당 도시가스 시설공사

□ 현황 및 문제점

- 예산확보 내역
 - 예산액 : 60,000천원
 - 지출액 : 19,987천원
 - 이월액 : 19,457천원
 - 불용액 : 20,556천원
- 사고이월사유는 괴안동 132-6번지 도시가스 저압배관투자완료 계약에 의거 시공하였으나 안전검사를 받으려고 (주)삼천리에 서류접수결과 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 (주)삼천리로부터 공사진행에 차질이 생겨 2000. 9. 31일까지 배관투자계획을 연기한다는 공문을 접수(2000. 2. 25)하고 당일 공사중지 명령함

- (주)삼천리의 도시가스 배관투자계획상 조속한 배관공사에 어려움이 있음
-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여 사고이월시킨 사유임

□ 대 책

- 도시가스 저압배관공사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주)삼천리에 타사업보다 우선하여 공사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빠른 시일 내 공사완료가 되도록 할 것

6. 경영사업특별회계의 운용관리

□ 현황 및 문제점

- 특별회계의 자금관리는 해당 부서의 담당자와 실·국장의 책임하에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해당 담당자는 특별회계의 회계업무를 주업무가 아닌 보조업무로 수행하고 있어 회계처리의 오류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 농협 예치금을 한미은행의 고금리예금에 예치하는 자금의 단순이동을 세출로 처리하여 장부상 예금잔액과 실제통장의 잔액이 다음과 같이 상이함
 - 장부상 잔액 : 5,704,574,411원
 - 통장상 잔액 : 6,974,525,895원
- 이러한 회계처리는 담당자의 회계처리방법의 미숙에 따른 것으로 주기적인 회계교육 및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관련 manual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회계교육 등이 필요함
- 아울러 99년 12월 31일자로 개신한 농협과의 시금고업무취급계약서에 따르면, 제3조(금고취급업무)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며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기타 특별회계에 포함되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보유자금 일부를 시금고가 아닌 타금융기관(한미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것은 시금고와의 계약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

□ 개선방안

- 특별회계의 회계처리는 회계전문직이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의 발생이 생기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특별회계의 업무가 해당 부서 담당자의 고유업무가 아닌 부수 업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책은 지속적인 회계교육과 주기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시금고업무취급계약서상에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현재 한미은행에 예치 중인 보유자금을 시금고인 농협으로 이전해야 할 것임

7. 노인복지기금 운영

□ 현황 및 문제점

- 여성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기금은 원미구, 오정구, 소사구지회에 분기별로 연4회 자금을 배정하여 주고 연1회 보조금 정산서를 수취하고 있으며, 99년도 교부액은 134,927,000원임
- 보조금 정산서에 지출증빙이 첨부되지 않아 지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는 불가하여 특이한 의견은 없으나,
- 노인복지기금조성및설치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정산과 관련하여, "...사업종료 후 1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자금 교부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대로라면 연4회 정산서를 수령해야 함에도 연1회만 제출받고 있음
- 기금담당이 회계전문인력이 아닌 상태에서 연1회 보조금 집행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개선방안

- 법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 정산을 연4회로 하고 각 지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

8.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관리 철저

□ 현황 및 문제점

- 부천시는 부천시민의날 기념 구민체육대회를 위하여 부천시체육회에 보조금 148,115천원을 지원하였음
-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부천시체육회는 집행완료 후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았음. 그리고 관련 보조금정산서와 지출증빙서류는 3개 구청과 35개 동에서 보관하고 있음
- 정산서는 대부분 관련공무원이 작성하고 있으며 지출증빙서도 대부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되고 있음
- 이는 형식적으로 부천시체육회로 보조금이 지출되었지만 실제로는 행정조직을 통하여 집행되고 있는 실정임
- 구청과 일부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민체육대회 보조금 관련 지출증빙서류에는 시민의날인 10월 1일 이후에 발행된 영수증이 첨부되거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도 없는 무통장입금증만을 증빙으로 보관한 사례 또는 소액도 아닌 대금지급을 통장입금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도 있음

□ 개선방안

-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부천시는 보조금 지원단체(부천시체육회)로부터 반드시 정산서와 지출증빙서류가 포함된 보조금정산서 및 사업평가서를 취합해야 할 것임
- 정산서 작성의 주체는 각 단체임을 명확히 하고 지출증빙서류는 간이 영수증이 아닌 가급적 세금계산서를 첨부도록 해야 할 것임

9. 민간위탁 공공근로사업비의 정산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의 경우에 공공근로사업비에서 민간위탁보조금 21,311,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서가 작성되어 실업대책총괄과에서 보관하고 있음.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의 사업은 오리농장의 이주사업으로 예산서의 경우에 보조금 21,000,000원 및 자부담 25,000,000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실제 사업은 토지구입 등의 문제로 인하여 중도에 중지되었으며 오리의 매각 등 자체 수입이 있었으나 정산시에는 부천시의 보조금에 한정하여 정산하였으며, 따라서 예산상의 자체부담에 대하여 검토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
- 보조금의 신청시에는 자부담(자체예산)에 대하여 언급이 있으며, 따라서 보조금의 정산시에는 보조금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검토시에 자부담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아야 검토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사료됨

□ 개선방안

- 부천시에서 사업비의 보조의 경우에는 정산이 필요한 것이며 이 때는 예산에 대한 정산으로 단순히 보조금에 대한 정산만을 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하여 결산을 하는 것으로 보조금의 유용한 활용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총체적인 결산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임
- 따라서 추후로는 사업의 유용·성의 관점에서 총체적인 보조금 등의 결산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 이 최초의 예산서의 자부담과 보조비율의 관계도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됨

10. 각종 복지관의 회계처리업무 체계화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부천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은 시민복지과 소관 10곳, 여성정책과 소관 2곳, 실업대책총괄과 소관 1곳 등 13곳에 이르고 있는 설정임
- 그러나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회계처리가 각 복지관마다 제각각인 형편임. 일부 복지관에서는 현재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는 통장과 장부를 통합하여 사용하거나 통장과 장부가 상이한 경우가 있었으며 운영비 일부를 차입한 사례도 있었음
- 상동사회복지관의 경우 위탁운영관리협약서 8조3항에 따르면 20% 이상 자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99년도에는 자부담 중 법인 전입금은 12월 30일에 6백만원만 입금됨

□ 개선방안

- 부천시는 복지관 위탁운영관리협약서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준하여 위탁운영기관의 자부담 20%와 부천시의 보조금 80%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 현재 각 복지관의 재원은 크게 보조금과 자부담(재단전입금, 후원금, 자체사업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재원의 출처에 따라 장부와 통장을 각각 구비해야 할 것임. 아울러 통일된 회계업무지침을 제시하여 주고 정기적인 회계교육이 요구됨
- 현실적으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대부분이 수탁 1차연도에만 재단전입금으로 자부담을 충당하고 2차연도 이후에는 주로 후원금과 자체사업수입으로 충당함으로써 자부담 20%의 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보조금차등 지급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요망함

* 삼정복지회관의 사례

□ 현황 및 문제점

- 부천시로부터 보조금 지원이 자연됨으로 인하여 99년 3월 10일 수탁기관인 서울신학대학교로부터 50,000,000원을 차입하여 통장에 입금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그 차입절차 및 증빙서류 등이 전무하고 99년 12월 30일에 15,000,000원을 상환한 것으로 결산하면서 이를 법인 전입금으로 전환하였다 고 하나 서류 및 통장에 근거가 정리되어 있지 아니함
회계연도 폐쇄기까지 3,500만원의 차입금 채무가 남아 있어 보조금 사전집행의 우려가 있음
- 자체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중 아침 또는 야간 프로그램의 경우 현금 수납시 접수대장없이 영수증만을 발행함으로써 일일결산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개선방안

- 부득이하게 차입을 할 경우 차입기관으로부터 증빙서류를 발부받을 뿐 아니라 통장에도 차입기관 이 명시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와 근거를 남기도록 지도 요망
- 아침 또는 야간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하여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반드시 상급자가 일일결산하도록 하며 가급적 전산화하여 수납과 관리를 이중화함으로써 현금수납의 위험성을 제고하도록 지도 요망

* 노동복지회관의 사례

□ 현황 및 문제점

- 부천시는 노동복지회관을 1999년도부터 한국노총에 위탁관리하고 있음. 한국노총에서는 노동복지 회관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회계방식과 관리방식을 사용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노동복지회관의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부천시에서 위탁한 타복지회관과는 정산방식을 다르게 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현재의 노동복지회관의 정산방식은 부천시에서 지급한 보조금은 일반회계로, 복지회관 의 운영수입 및 재단전입금 등의 수입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연도폐쇄시에는 이월잔액을 부천시의 승인을 받아서 일부는 일반회계로 기타는 특별회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음

- 현재의 노동복지회관의 정산방식은 타복지회관의 정산방식과 상이하여 이해 및 비교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노동복지회관의 회계업무처리와 관련하여 2000년 1월 27일부터 2일 간의 부천시의 지도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이때 여러 가지의 자적사항이 있었으나 그 중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나 현재까지 수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직원에 대한 객관적인 임금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음

□ 개선방안

- 실업대책총괄과에서는 복지회관을 처음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상기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내용의 이해관점에서 본다면 구체적으로 차이가 발생해야 하는 근거가 문제가 없다면 타복지회관의 회계처리 및 정산방식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부천시노동복지회관위탁운영관리협약 제23조제1항에서도 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운영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지도점검결과의 조치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위탁관리자 스스로 고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남부노인복지관의 사례

□ 현황 및 문제점

- 남부노인복지관의 99년 보조금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복지관은 운영과 관련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과는 별도로 수탁자가 운영하는 ○○교회의 무료급식소 운영사업을 부천시로부터 위탁받아 32백만원의 사업비를 교부받고 있으나, 일반보조금으로 복지관의 식당이 아닌 동 ○○교회의 경로식당에 15백만원을 지출함
 - 위탁계약서를 검토하여도 업무지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지관 운영을 위해 교부한 보조금을 복지관 운영이 아닌 수탁자가 운영하는 교회의 사업으로 자금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 가 있다고 보여짐
 - 둘째, 사업예산 편성시 퇴직금 적립금을 계산하여 인건비로 청구하고 동 적립금은 별도통장 관리하고 있으나 연도말 현재 복지관의 퇴직금 추계액은 20,026,468원인 반면, 예산편성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은 23,948,628원으로 추계액보다 3,922,160원을 과다하게 교부받음
 - 예측성 경비이므로 차액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하나 과다청구를 고려하여 다음연도에 예산을 감축하여 편성할지는 의문임

□ 개선방안

- 위탁계약서상의 보조금 집행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집행에 대한 보조금 통제관리를 강화할 것
- 추경예산 심사시 퇴직금 추계액을 초과하는 적립액을 최소화되도록 인건비 예산을 감축할 것

※ 중부노인복지관의 사례

□ 현황 및 문제점

- 중부노인복지관이 시비보조금 이외에 자체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내역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수 입 액(99년, 원)
후원금	20,254,860
사회교육(장수대학/장수교실 등)	10,116,000
노인정교육	4,330,000
취업교육	1,800,000
식당운영	19,524,000
이미용 운영	4,765,000
의료보호	8,906,800
물리치료	328,000
기타	2,329,024
합 계	72,353,684

- 수익금 관리체계에 대한 검토결과 개선이 요망되는 몇 가지는 다음과 같음

- 식당수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현금판매는 판매액이 완전히 계상되었는가 하는 완전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부통제제도 설정이 최우선시 되나 복지관은 1일 판매액에 대한 수입금 증빙이 없음. 표찰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회계상의 통제제도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제도임. 현금수취담당자가 10명 판매를 9명으로 보고하는 경우에 대한 제도적 적발장치가 없음
- 후원금의 경우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주기적으로 인출 일반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있음. 후원금 통장의 입금시점에 장부에 수입 계상하여야 함에도 복지관은 인출시점에 수입계상하여 인출시점 까지 수입금이 과소 계상되는 결과가 발생함. 은행이 거리상으로 멀어 매일 인출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 복지관의 항변이나 텔레뱅킹을 통해 그 날의 입금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자금잔액과 통장잔액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됨
- 일일결산에 대하여 매일의 수입금별 판매현황을 작성하여 관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함에도 복지관은 서무일지만을 작성할 뿐 일일결산은 이루어지지 아니함

개선방안

- 수입종류별 수입금 증빙관리절차를 마련할 것. 시간의 제약으로 모든 통제절차를 검토한 것은 아니나 식당의 경우 일련번호가 부여된 식권제 등을 도입,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일일 수입금별 판매현황을 작성하고 관장의 결재를 득하여 일일결산체계를 명확히 수립, 운영할 것

11. 시립도서관 자금 운영

 현황 및 문제점

- 시립도서관이 99년도 중 일상경비로 자금을 교부받아 집행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지출일자	채 주	금 액	비 고
자 산 취득비	6.8	(주)진우	29,200,000	1백만원 이상 지출내역
	6.9	대한가구공업	97,000,000	
	6.30	조달청	32,237,480	
	7.27	(주)진우	10,890,000	
	기타 9건		33,760,000	
	소 계		203,087,500	
도 서 구 입 비	6.18	경인문고	32,176,460	
	9.20	경인문고	47,939,870	
	12.5	경인문고	4,260,020	
	12.20	영풍문고	20,847,220	
	"	영풍문고	13,563,700	
	기타 2건		9,826,860	
	소 계		128,614,130	
연 구 개 발 비	2건		134,500,000	
재 료 비	3건		10,279,390	
합 계			476,481,020	

- 상기의 자금집행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중앙시립도서관에서 근무하는 회계직공무원은 직책상으로 분임경리관으로 되어 있어 일상경비의 집행이 주된 업무이나 5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회계실무자 1인이 수의계약에 의해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대금도 지불하는 것은 바람직한 직무구조로 보이지 않음
 - 예정가격의 경우 실무자가 물가자료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고 하나 산정된 예가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업무에 밝지 않은 분임경리관임을 감안할 때 산정된 가액의 적정성도 의문시됨. 또한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동시에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업체의 유·무형의 로비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것도 커다란 문제로 보여짐
 - 99. 9. 20일 대금 지급된 47,939,870원의 도서구입비의 경우 입찰참가 업체는 2곳이었으나 1개 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의 주소와 사업자의 주소가 동일한 영세업체로 실질적인 계약이행 능력이 없어 보임에도 형식상으로 입찰한 혼적이 엿보였고
 - 동 사업자는 입찰, 수의계약 대부분에 참가하였음에도 1건의 낙찰도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낙찰된 업체는 99년 집행된 총 도서구입비 149,731,360원의 62%에 해당하는 92,142,890원을 계약체결 하였을 뿐만 아니라
 - 99. 12. 20일 대금지급된 20,847,220원과 13,563,700원의 도서구입비는 동일에 계약된 것이며 선정 업체도 동일인으로 실질적으로는 1건의 계약으로 보여지나 2건으로 나누어 수의계약 방식을 취한 혼적이 보였음
 - 1개의 업체가 충분히 62% 낙찰받을 수 있는 것이며 심지어 100%도 가능하고, 또한 2건의 계약도 성질상 별도로 하는 것이 옳을 수 있으나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은 근본적인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속되는 문제로 남아있게 되는 것임
 - 법규상으로도 일상경비의 금액기준이 없어 큰 규모의 자금을 일상경비의 명목으로 교부하여 해당 경리관이 직접 자금을 집행하게 하여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도 문제가 있음

□ 개선방안

- 소액의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청의 회계과에서 자금집행을 주관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일상경비의 금액기준을 정하여 거액의 자금을 일상경비로 교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12. 만화정보센터 회계업무 미숙

* 수익금 관리

□ 현황 및 문제점

- 만화정보센터의 99년 수익금 내역은 다음과 같음

구 분	개관청사 수입	만 화 CD롬 판매	만 화 교육사업	이자수입	합 계
금액(원)	1,341,000	7,899,800	12,054,000	722,440	22,017,240

○ CD롬 판매에 관하여

- 센터는 CD롬을 제작하여 일부는 유료로, 일부는 무료로(약 50% 차지) 판매하고 있고 유료판매의 경우 계좌송금 또는 현금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 현금판매의 경우 어떠한 수입증빙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판매액의 완전성에 대한 통제절차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특히 무료와 유료판매 대상자의 구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료로 팔고도 무료로 판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 만화교육사업의 경우

-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를 통해 수강료가 전액 입금되기 때문에 CD 판매의 경우보다 문제는 적으나
- 특정일의 수입액이 즉시 장부로 기록되지 않고 정규장부가 아닌 현황표 등에 의해 수입액을 파악(장부작성체계 참조)
- 2000년 1, 2월 중에 판매, 수강신청 받은 것은 연도폐쇄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귀속시기를 2000년으로 하여야 함에도 담당자의 이해부족으로 99년 수입으로 귀속시킨 사례도 있음

○ 장부작성 체계의 경우

- 특정일(99. 12. 24)의 장부잔액과 통장액은 다음과 같음

구 分	금 액	구 分	금 액	차 액
정규장부	167,877,530			
판매대장	7,804,800	통장잔액	173,747,270	1,935,060
합 계	175,682,330			

- 위의 차이가 나는 원인은 99. 7. 20일 저작료로 지급된 저작료 1백만원과 매월 특정명목으로 지급된 934,680원이 장부에서 누락되었고 동 효과를 반영하더라도 380원의 차이가 나는 상태임
- 기본적으로 기초 회계지식이 부족한 담당자가 회계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문제라 보여짐

□ 개선방안

- 수익금 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현금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장부작성 및 일일결산 등 기초회계지식이 풍부한 자로 하여금 회계업무를 수행케 하여야 할 것임. 현재 만화정보센터의 회계담당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의 신분이나 회계직 공무원의 선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지출 관리

현황 및 문제점

- 만화정보센터가 99년 중에 지출, 정산한 내역은 사무실운영비, 개관행사비, 자료구입비 등 11개 사업분야 418,169,410원으로 정산서 및 지출증빙을 통해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개관행사비, 상설전시관 운영비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복수로 견적을 받지 아니한 사례가 많았고(예산을 절감하고자 노력하려는 동기부여가 없다는 것도 문제)
 - 사이버도시 사업의 경우 웹사이트 구축용역(예산 120,000,000원)을 체결하면서 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자를 선정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 운영장부도 일반적인 법정장부 서식으로 결정예산액, 자금교부액, 지출원인행위액, 자금잔액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에도 수입, 지출, 잔액만이 나타나는 현금출납부 수준의 장부가 운영되고 있음

개선방안

-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복수견적을 받을 것과 보조금의 경우 예외적용될 수 있는가는 의문으로 하더라도 일정액 이상의 사업집행의 경우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입찰로 계약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보조금도 사업예산별로 교부하여 사업간 예산이 전용되지 못하게 함은 물론 운영장부도 예산과 자금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정 지출부 양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13. 각 실·과·동사무소의 과대한 도서구입비

현황 및 문제점

- 상당수의 실·과 및 동사무소에서는 기호일보에서 발행한 99.지방자치사진연감 등의 자료집을 구입하였으며, 한 개의 동사무소 등에서는 100,000원 정도의 자료이나 부천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개선방안

- 신문과 도서의 구입은 적정한 구입량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신문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것으로 해당 부서에서 구입을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나, 상기 자료집의 경우에는 부천시의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수량을 파악하여 예산한도 내에서 구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

고 사료됩니다.

14. 각 실·과의 일상경비 과다보유 및 운영상의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지속적인 본청과 구청의 노력으로 절대적인 대부분의 동사무소 일상경비 잔액은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실·과의 경우에는 일상경비 잔액이 아직도 일일평균지출액의 3배 정도에 이르고 있음. 이는 일상경비의 자금배정이 월1회만 이루어졌기 때문임

□ 개선방안

-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일상경비의 자금배정을 월3회 하고 있으나 본청과 구청의 각 실·과는 월1회 만 자금배정을 함에 따라 자금의 잔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자금배정의 시기를 2~3회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물론 구청의 경우에 이미 일상경비의 지출이 구청의 총무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자금배정의 문제는 사라진 것이나 본청의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1]

임차재산 보증금 채권확보 현황

(단위 : m², 천원)

구 분	발 행 액			상환액	상 환 잔 액	상 환 계 획									
	계	원 금	이 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이후
계	338,424	207,728	130,696	44,322	294,102	18,387	23,307	24,719	27,552	31,722	32,742	30,264	21,060	16,053	68,296
일 회 계	245,573	145,718	99,855	30,792	214,781	13,227	16,953	14,667	15,300	20,162	21,860	21,079	15,244	13,321	62,968
특 회 계	92,851	62,010	30,841	13,530	79,321	5,160	6,354	10,052	12,252	11,560	10,882	9,185	5,816	2,732	5,328
기 타 회 계	374	150	224	260	114	13	17	18	18	18	19	11			
공기업 회 계	92,477	61,860	30,617	13,270	79,207	5,147	6,337	10,034	12,234	11,542	10,863	9,174	5,816	2,732	5,328

[표 II]

임차재산 보증금 채권확보 현황

(단위 : m², 천원)

순번	설·파·소별	용 도	소 재 지	임차규모	임차금액	임차기간	소유자	전세권 설 정	채권확보 가능금액
계			27개소		7,162,000				6,366,308
1	여성복지과	요보호아동 그룹홈운동	원미동 165-28	1층 70.41 3층 59.87	80,000	99. 12. 1 ~ 2000. 11. 30	김종기	1순위	80,000
2	"	노인의집	중동 1027 한라마을 126동 1510호	58.14	50,000	99. 12. 11 ~ 2001. 12. 10	심웅식	2순위	50,000
3	"	노인의집	괴안동 98-4	1층 49.5	28,000	99. 12. 1 ~ 2000. 12. 1	김용자	2순위	28,000
4	"	노인의집	소사동 26-2 대화②-103	1층 60.48	40,000	99. 11. 25 ~ 2001. 11. 25	김순금	1순위	40,000
5	"	노인의집	괴안동 102-5	1층 49.6	22,000	99. 12. 4 ~ 2001. 11. 25	장영분	2순위	22,000
6	시민복지과	장애인단체 사무실	춘의동 209-2, 14	2층 259	150,000	98. 10. 23 ~ 2000. 10. 22	한영호 외 1인	4순위	0
7	"	장애인 자립작업장	상동 242-8, 9	2, 3층 536.7	400,000	98. 2. 10 ~ 2002. 2. 9	나윤주	1순위	400,000
8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춘의동 127 광성③309	79.75	30,000	99. 3. 31 ~ 2001. 3. 30	김영균	2순위	30,000
9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중동 711-12 현진402호	60	38,000	98. 3. 16 ~ 2002. 3. 15	박덕순 외 1인	1순위	38,000

순번	실·과·소별	용 도	소 재 지	임차규모	임차금액	임차기간	소유자	전세권 설 정	채권확보 가능금액
10	시민복지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중동 1172 이주Ⓐ1101-104	84.93	75,000	97. 7. 3 ~ 2001. 7. 2	천주교 성가회	1순위	75,000
11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소사본동 소사 주공Ⓐ111-403	82.58	55,000	2000. 4. 1 ~ 2002. 3. 31	이종석	2순위	55,000
12	실업대책 총괄과	부천인력은행 사무실	상동 464-1 대명 시티프라자BD	5층 511.03	420,000	98. 4. 9 ~ 2000. 4. 8	성이경 외 2인	1순위	420,000
13	"	민주노총사무실	내동 96-1, 2	3층 134	30,000	98. 12. 28 ~ 2000. 12. 27	심봉용 외 3인	1순위	30,000
14	시립도서관	새마을이동 도서관사무실	도당동 217-8, 10, 11	3층 403.68	240,000	98. 10. 4 ~ 2000. 10. 3	이필규	2순위	240,000
15	오정구 보건소	오정구보건소	오정동 217-5 218-4, 5	지상 4층 1,560	850,000	99. 8. 4 ~ 2000. 8. 3	민경환 외 2인	1순위	478,549
16	원미구	구)소사동청사	소사동 44-16	지하 1, 지상 1, 2, 3층 398	390,000	93. 1. 12 ~ 96. 1. 11	김창섭	1순위	124,433
17	"	중4동 청사	중동 1159-8	2, 3층 859	395,000	98. 7. 24 ~ 2000. 7. 23	이명선	1순위	395,000
18	"	경로당	춘의동 144-8	지하 1, 지상 1, 2층 173.25	60,000	99. 4. 26 ~ 2001. 4. 25	최성희	1순위	60,000
19	"	경로당	원미동 154-2	지하 1, 지상 1, 2층 125	60,000	99. 7. 10 ~ 2001. 7. 9	김상옥	1순위	60,000
20	"	경로당	소사동 46-3	지하 1, 지상 1 75.38	40,000	99. 12. 6 ~ 2001. 12. 5	이기환	1순위	40,000

순번	실·과·소별	용 도	소 재 지	임차규모	임차금액	임차기간	소유자	전세권 설 정	채권확보 가능금액
21	소사구	경로당	삼곡본1동 591-19	지상 1, 2층 139.32	70,000	99. 10. 1 ~ 2004. 9. 30	최준기	1순위	70,000
22	"	경로당	소사본2동 56-10	1층 65.4	55,000	99. 6. 24 ~ 2001. 6. 30	육중수	1순위	55,000
23	"	소년가장 전세방	삼곡본1동 806-4	3층 29.75	7,000	93. 2. 5 ~ 2000. 2. 4	민유식	확정일자	7,000
24	"	소년가장 전세방	소사본동 223-37	2층 9.92	7,000	98. 11. 8 ~ 2000. 11. 7	김충호	확정일자	7,000
25	오정구	오정구청사	도당동 10-1, 2	지하 1 ~ 지상 5 6,214	3,500,000	2000. 2. 5 ~ 2001. 2. 4	김남일 외 3인	1, 3순위	3,500,000
26	"	경로당	고강동 417-7	지층 80.37	55,000	99. 6. 10 ~ 2001. 6. 9	정진건설	1순위	46,326
27	"	소년가장 전세방	작동 74-9	1층 33.06	15,000	99. 10. 28 ~ 2001. 10. 29	강유성	2순위	15,000
				"이 하 여 백"					